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 운영요령-

〈 편집부 〉

통상산업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환경영경영체제 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환경 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9월 22일 개정·고시하였다.

이에 본지에서는 본 고시의 본문 내용에 대해서만 소개한다.

제1조(목적)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환경영경영체제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관의 인증수행범위)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인증수행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인증기관 세부지정기준 등)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요건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절차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 등) 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절차와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3과 같다.

제5조(인증표시의 사용 및 홍보방법 등) 규칙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인증표시의 사용 및 홍보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4와 같다.

제6조(연수기관의 세부지정기준 등)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의 지정요건과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업무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5와 같다.

제7조(연수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 등)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절차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의 지도·감독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6과 같다.

제8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자격인증절차 및 자격유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7과 같다.

제9조(해석지침)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이 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대하여 국제표준화기구 등에서 정한 기준 또는 지침에 따라 해석지침을 따로 정하

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지도·감독)통상산업부장관은 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립기술품질원장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관·연수기관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고시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경영체제 인증 및 연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심사원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7의 4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원보 자격인증을 받은 자가 사업자의 환경경영체제 인증 심사의 전과정에 4회이상(심사활동일수가 최소20일 이상이어야 함)참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요령에 의한 심사원의 심사경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또한 심사원보 자격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심사원 또는 선임심사원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환경경영체제 인증심사의 전과정에 각각 3회이상(심사활동일수가 최소 15일이상) 또는 2회이상(심사활동일수가 최소 10일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 요령에 의한 심사원의 심사경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사원 자격인증을 받은 자는 1998년 3월 31일까지 「별표7」의 42의 규정에 의한

심사원 자격요건을 갖추어 심사원 자격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인증심사원의 심사경력에 대한 검증은 「별표7」의 45(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8년 3월 31일까지는 인증기관의 장이 선임심사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심사원에 의해 실시 할 수 있다. 이 때 선임심사원의 역할을 수행한 심사원의 심사경력에 대한 검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실시하여야 한다.

④ 1996년 10월 1일 이전에 외국의 환경영영체제인정 기관이 승인한 환경영영체제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는 규칙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로 본다.

⑤ 규칙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원보 자격인증을 받은 자가 외국의 심사원자격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심사원 자격인증을 받아 사업자의 환경영영체제에 대한 제3자 인증심사(외국인증 기관에서 수행한 심사)의 전과정에 최소한 10회(이 경우 심사활동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중 최소 40일은 현장심사를 위한 것이어야 함)이상 참여한 경력은 별표7의 42의 규정에 의한 심사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제4조(심사반 구성에 관한 특례)환경경영체제 인증 심사를 위한 심사반 구성시 「별표2」의 5.3(9)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8년 3월 31일까지는 1개 심사반에 선임심사원 1명 이상 또는 심사원 2명 이상이 포함된 경우 당해 심사범위를 부여받지 아니한 심사원 1명을 심사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1개 심사반에 인증심사 경력을 쌓기 위한 인증심사원을 2명까지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인증심사일수에 포함하여 그 비용을 부가할 수 없다.